

#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1. 21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1.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1.16.
- 다. 상정일자 : 제19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1.21)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서 문 석 복지행정과장

### 가. 제안이유

시중은행과의 차별성 부족과 엄격한 용자조건 등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기에 저소득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용자조건과 상환조건 등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기금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용자대상 정비(안 제4조제1항제3호 삭제)
  -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용자대상 중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를 삭제
- 2)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용자조건 완화(안 제4조제3항 삭제)
  -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용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규정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의 위화감 해소 및 신청절차 간소화 추진
- 3) 용자금의 상환조건 완화(안 제7조제1항)
  - 용자금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으로 변경하여 용자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
- 4)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안 제7조제2항)
  - 조례에 규정된 “연 3퍼센트” 대부이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변경
- 5) 신용보증서 용자 실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 현재 연대보증, 부동산담보 제공자 외에 신용보증으로 용자금을 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안정자금 중 학자금 용자조건인 학교장 추천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용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자금의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으로 변경하여 용자대상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2014년 9월말 기준, 기금 총액은 31억3,499만원으로 이중 용자금은 5억3,508만원이고, 예치금은 정기예금과 공금계좌 포함 25억9,991만원임. 시중금융

권 대출금리와 비교하여 기금의 비교우위가 없어 2012년도 이후 용자금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용자금 금리는 연 3퍼센트에 변동이 없었고, 담보대출과 용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보유재산 수준 등에 따른 제한 등으로 용자금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용자 및 상환조건 등을 완화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